

2020년도 제2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0. 5.(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전문위원

2. 전차(제2020-22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500건(안건번호 제2020-126661호~12803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26661호~126664호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26665호~126669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물 없이 우리말 자막 파일만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의 자막파일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48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33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2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제1호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제2호 안건은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종전과 같이 제2호 안건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제1호 안건에 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2호 안건은 위원님들과 같이 비공개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 부분인 7

쪽~1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주)한글과컴퓨터’, ‘Adobe Systems Inc.’, ‘CJ엔터테인먼트’, ‘JTBC’, ‘넷플릭스’, ‘미국 Cinemax’, ‘미국 FOX’, ‘애니플러스’, ‘일본 AT-X’, ‘일본 NHK E 테레’, ‘영국 Sky One’, ‘월트 디즈니’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50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 2020-126661호~128034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업로드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 본문을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는 각 본문에 출처를 표시하고 있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닉네임 “△△△△ △△△△△△△△△△△△△△△△△△” 등으로 기재하고 있어, 자신이 2차적저작물로서 만든 자막 파일이 아님을 알 수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26661호~12666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B 위원: 일본 애니메이션을 불법복제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A 위원, C 위원: 동의함.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0-126665호~126669호에 해당하는 블로그를 큰 화면에서 직접 보여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블로그의 게시물 전체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시정권고 했던 블로그임.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 뿐만 아니라 영상물도 업로드하고 있음. 블로그를 보시면 상습성이 인정될 정도로 많은 양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 C 위원: 영상과 싱크된 자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동되는 것인지?
- A 위원: 간단히 말하면 영상물에 번호가 매겨진 프레임이 있는데, 싱크는 거기에 자막을 끼워넣는 방식임.
- 성원영 전문위원: 영상물과 smi 같은 자막이 있으면 영상물 재생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영상물 위에 자막이 입혀져 재생이 됨.
- A 위원: 블로그에 광고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인적으로는 자막만 올린 게시물을 제재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있지만, 해당 블로그는 순수 취미 목적으로 자막을 게시한다고 보기에 많은 양을 상습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제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C 위원: 기존 심의위원회는 불법 복제·전송의 규모나 상습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동종의 불법복제물 전송 양이나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콘텐츠의 성질을 부수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B 위원: 심의위원회의 기존 입장은 블로그나 카페 운영자가 취미 생활 차원에서 자막을 직접 번역해서 올리거나 그 목적이 취미수준에 머무르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하자는 것이었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를 기반으로 영리활동을 한다면 가결하자는 입장이었음. 금번

안건은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 C 위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가부가 나뉠 것으로 보이나, 이번 건은 상당한 양의 자막 파일 게시를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동 게시물이 영상과 싱크되어 합법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개연성이 높은 점, 본 건 복제·전송자가 직접 우리말로 번역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해당 블로그상 유사 방식의 자막 파일이 다수, 상습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점, 광고가 게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결 의견임.

- B 위원: 게시자가 직접 번역한 자막이 아니고 이를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바, 심의대상 게시물의 자막파일은 이용자들이 하여금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26661호~12666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26670호~128034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

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덤디덤디'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0-126706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가요 '덤디덤디' 등 2020. 9. 20. 기준 실시간 TOP 100곡을 4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덤디덤디'는 가수 '(여자)아이들'이 2020. 8. 3. 발매한 앨범 '덤디덤디' 수록곡으로, 작사, 작곡 및 편곡에 '(여자)아이들'의 멤버 '소연'이 참여하였음.

(게임 'PGA 투어 2K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0-126764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PGA 투어 2K21'을 560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게임은 2020. 8. 21. 출시된 최신 게임으로, 정품은 글로벌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인 '스팀' 등에서 65,000원에 판매 중임.

(컴퓨터 프로그램 'Adobe Acrobat Pro DC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26834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Adobe Acrobat Pro DC 2020'을 무료로 제공 중인 사안임. 개발자는 어도비 시스템즈이고, 최신 안정화 버전은 2020. 2. 11. 출시되었음. 정품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월 29,700원에 이용 가능함.

(보호원에서 제출한 채증 화면을 제시하면서)채증화면에서 Crack, Activation, 키젠 등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사안일 가능성이 높음.

(만화 '새벽의 연화'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0-126911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새벽의 연화 1~190화'를 180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만화는 2009년부터 일본 하나토유메 코믹스와 우리나라 메이퀸 코믹스에서 연재 중이며, 단행본은 일본에서 33권까지, 우리나라에서 31권까지 출간되었음. 단행본 구매가격은 권당 4,500원임. 네이버 시리즈에서는 권당 2,500원에 영구소장

가능함.

(영화 '오케이 마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12722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영화 '오케이 마담'을 186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8. 12. 개봉하여 상영 중임. 누적관객은 2020. 9. 27. 기준으로 122만 명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26670호~12803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C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A 위원: 동의함. 다만 마찬가지로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26670호~128034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26661호~12803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2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0. 12.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